

서울특별시 양천구 갈산문화예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2021. 10. 14.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갈산문화예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1. 회부경위

본 제정안은 2021.9.27.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9.28. 당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보고 드리는 것임(의안번호 : 2654호).

2. 제안이유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진흥 및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산을 위해 건립된 갈산문화예술센터 개관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갈산문화예술센터의 설립 근거와 위치, 운영시설을 정함.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갈산문화예술센터의 사용허가 및 취소,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

(안 제6조, 제10조)

다. 갈산문화예술센터 사용료의 징수 및 반환, 요금의 감면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라. 갈산문화예술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발췌문 별첨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5조

-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

나. 예산조치 : 2022년 본예산 반영 예정(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1. 8.26.~2021. 9.15.) 결과 :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4)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5) 물가대책위원회 심의(2021. 9.17.) 결과 : 원안동의(사용료)

5. 검토의견

가. 제정 취지

-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신정7동에서 개관 예정인 갈산문화예술센터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 검토 내용

○ 조례안의 체계

1.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갈산문화예술센터의 설립 근거와 위치, 운영시설, 사용시간 등을 규정함.
2. 안 제6조와 제10조에서는 갈산문화예술센터의 사용허가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 갈산문화예술센터 사용료의 징수 및 반환, 요금의 감면, 사용자의 부대설비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
4. 안 제11조에서는 갈산문화예술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진흥 및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산을 위해 건립된 갈산문화예술센터 개관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제정안임.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갈산문화예술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과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산을 위해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양천구민이 보다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기존의 양천 문화회관과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사업과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임.

【관계 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생략)

② (생략)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